

중국공산주의청년단 규약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부분적으로 개정,
2018년 6월 29일 통과)

총 칙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이
이 령도하는 선진청년들의 대중단체
조직으로 광범한 청년들이 실천 속에
서 중국특색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
우는 학교이며 중국공산당의 조수이
며 후비군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사

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세이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의 강령을 단호히 옹호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결연히 관철하며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고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무실력행하며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을 단합하여 확고부동하게 당을 따라 나아가고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

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중국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발전성장하였으며 시종 혁명투쟁의 전렬에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였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신중국을 창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는 행정에서 생력군과 돌격대의 역할을 하였으며 당을 위하여 수많은 신생력량과 중견력량을 육성하여 수송하였다. 당중앙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에는 당의 사업중심이 옮겨진 데 비추어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며 젊은 세대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촉진하였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청년단은 시대의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 혁신에 정진하고 단을 엄하게 다스리며 광범한 청년들을 단합인솔하여 당의 령도하에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이룩하는 생동한 실천에 적극 뛰어들도록 하였다.

신시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기본과업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으며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네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사회주의초급단계의 당의 기본로선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정치성, 선진성, 대중성을 확실하게 유지,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과업으로 삼고 당집권의 청년대중기반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것을 정치적 책임으로 삼으며 중심을 둘러싸고 전반 국면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업무주선으로 삼아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로 청년들을 교양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리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규율을 지키는 청년들을 육성하여 당에

신선한 피를 수혈하고 나라건설을 위하여 나젊은 인재를 양성하며; 광범한 청년들을 단합인솔하여 자력갱생하고 간고하게 창업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나라를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다스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실천 속에 적극 투신함으로써 ‘두개 100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는 것이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업에 사상정치

사업을 일관시킨다. 청년들을 조직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며 당의 기본로선교양, 애국주의,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사상 교양, 사회주의핵심가치관교양, 중화우수전통문화, 혁명문화와 사회주의선진문화 교양, 근대사와 현대사 교양, 국정교양, 민주 및 법제 교양 등 여러 면의 사업을 폭넓게 벌림으로써 청년들이 민족적 자존, 자신, 자강 정신을 강화하고 올바른 리상과 신념, 정확한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리론, 중국특

색의 사회주의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며 청년들이 민족부흥의 중임을 떠메고 나갈 시대적 신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공청단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공동리상과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에 대한 교양을 진행한다. 청년들이 현대과학문화지식을 학습하고 인류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참조하며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침식을 막아내도록 적극 도와줌으로써 청년들의 사상, 도덕 수양과 과학, 문화 자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경제와 사

회 발전 가운데서 청년들을 이끌고
생력군과 돌격대의 역할을 한다. 우
리 나라 사회주요모순이 아름다운 생
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된 데 비추어
청년들을 조직하여 개혁개방과 사회
주의현대화건설의 실천 속에 뛰어들
어 혁신, 조화, 룡색, 개방, 공유에
기초한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과학기
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 인
재에 의한 강국건설전략, 혁신에 의
한 발전전략, 농촌진흥전략, 지역간
균형적 발전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전
략, 군민융합 발전전략이 실시되도록
촉진한다. 또한 청년들이 과학기술은

제1생산력이라는 관념을 수립하고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원동력이라는 관념을 수립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장악하여 운용하며 현대적인 관리방식을 배우고 또 이에 수용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과감히 혁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종합적 국력을 신장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우리 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적을 쌓는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당이 청년들을 관리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당과 청년들을 련결시키는 교량적 역할과 견인대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당을 위하여 청년대중사업을 착실히 수

행한다. 당과 정부를 적극 협조하여 청년사무를 관리하고 청년발전계획이 실시되도록 조를, 독촉하며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공기능을 주동적으로 짚어지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국가거버넌스능력의 현대화를 위하여 복무한다.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구체적 리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며 당의 중심과업을 둘러싸고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활동을 벌리며 청년들의 사업과 학습, 생활을 관심하고 청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당과 정부에 반영하며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해치는 온갖 현상과 투쟁함으로써 청소년

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애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국 여러 민족 청년들과의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관계를 단호히 수호하고 발전시키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며 홍콩특별행정구 청년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청년동포, 대만 청년동포와 해외의 청년교포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조국통일의 위업을 함께 추진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우리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며 평화친

선, 독립자주, 상호학습, 평등협력, 공동발전을 토대로 하고 정확한 의리관을 견지하며 세계 각국 청년조직들과의 교류를 적극 확대하고 그들과의 친선관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일대일로’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추진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이 신시대의 기본과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중국특색사회주의 대중단체발전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정치성이라는 령혼을 파악하고 선진성이라는 중요한 주안점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성이라

는 근본특징에 립각하여 단의 개혁을 심화하고 단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단건설의 과학화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훌륭한 전통과 작풍을 발양하여 사업을 창조적으로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공청단을 청년들을 단합하고 교양하는 튼튼한 핵심조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단건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요구를 관철하여야 한다.

(1) 당의 령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전단은 당의 기본로선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당의 기본로선으로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단의 제반 사업을 모두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에 복종시키고 이 중심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과 네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통일시켜 당의 기본로선이 단사업에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당중앙과 전당에서의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며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당의 의지와 주장을 결연히 관철하고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당건설로 단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지하여 당의 요구를 단건설에 관철시키고 단건설을 당건설의 총체적 전망계획에 포함시키며 배치와 검사와 총화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2) 청년들을 도와 정확한 리상과 확고한 신념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리상과 신념이라는 고지에 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시대적 주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광범한 청년들의 력사적 책임감과 분투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광범한 청년들이 시대의 앞장에 서도록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단원의 선진성을 유지, 강화하는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단원의 영예

감을 확실히 강화하고 단원의 모범역할을 실제적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3) 청년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사업의 생명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며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봉사능력을 향상시키며 봉사자원을 발굴하고 백방으로 청년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더욱 관심해주고 도와주며 청소년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으로써 단조직이 광범한 청년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생각나서 찾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력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견지하

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공청단의 근본적인 조직원칙이다.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단원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단원의 민주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집권을 제대로 실시하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며 단조직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관철집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여야 한다. 공청단개혁에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고 조직혁신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며 단의 흡인력과 결집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단사무의 효과적인 적용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여야 한다. 기층조직은 단사업의 토대로 된다. 단의 지도기관에서는 기층이 최

우선이라는 관념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여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업작풍을 발양하며 기층에 심입하고 기층을 위하여 복무하며 기층건설을 드팀없이 잘 틀어쥐으로써 기층의 활력을 끊임없이 증강하여야 한다.

(6) 단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엄한 기준, 엄한 조치를 단을 엄하게 다스리는 전반 행정과 각 방면에 일관시켜야 한다. 규칙에 따라 단을 관리하고 단 내부의 규정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우선 단간부부터 엄하게 관리하고 단의 지도기관과 지도간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기관화, 행정화, 귀족화, 오

락화의 경향을 견결히 반대하여야 한다. 정치성, 시대성, 원칙성, 전투성을 강화하는 요구에 따라 단내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적극적으로 건전한 단내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 기풍이 바른 량호한 정치생태를 조성하여야 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령도를 받으며 단의 지방조직과 기층조직은 동급 당위원회의 령도를 받는 동시에 상급 단조직의 령도를 받는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의 위임을 받고 중국소년선봉대의 사업을 령도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화전국청년련합회의 핵심단체회

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화전국학생련합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1장 단 원

제1조 만 14세 이상, 만 28세 이하의 중국청년으로서 단규약을 승인하고 단의 일정한 조직에 가입하여 거기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려 하고 단의 결정을 집행하려 하며 제때에 단비를 바치려 하는 자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만 28세가 된 단원은 단내에서

직무를 맡지 않은 경우에 퇴단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원은 공산당에 가입한 후에도 여전히 단적을 보류한다. 그러나 만 28세가 된 단원으로서 단내에서 직무를 맡지 않은 경우에는 단적을 보류하지 않는다.

제2조 단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힘써 학습하고 단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과학, 문화, 법률 및 실무 지식을 학습하여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높

여야 한다.

(2) 당의 기본로선과 제반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집행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단조직에서 맡겨준 임무를 힘써 수행하며 학습, 로동, 사업 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모범역할을 하여야 한다.

(3) 국가의 법률 및 법규와 단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단의 결정을 집행하며 사회주의 새 기풍을 발양하고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과 사회주의영육관을 실천하며 공산주의도덕을 제창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민대중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선뜻이 나서고 용감히 투쟁하여야 한다.

(4) 국방교육을 받고 국방의식을 강화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의무를 적극 리행하여야 한다.

(5) 인민대중을 허심히 따라배우고 청년들이 진보하도록 열정적으로 도와주며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비판과 자기비판을 진행하고 그릇된 언행을 과감히 폭로하고 시정하며 부족점과 과오를 과감히 시정하고 단결을 자각적으로 수호하여야 한다.

제3조 단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관련 단회의와 단조직에서 전개하는 제반 활동에 참가하며 단조직의 교양과 양성을 받을 수 있다.

(2) 단내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가진다.

(3) 단회의와 단매체를 통해 단사업과 청년들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의 토의에 참가하고 단사업에 대하여 건의를 제기하며 단의 령도기관과 단의 사업일군들을 감독, 비판할 수 있다.

(4) 단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단호히 집행하는 전제하에 자기의 의견을 보류할 수 있으며 상급 단조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단조직회의에서 책별을 토의

할 때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단원들은 그를 위하여 증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다.

(6) 급별에 관계없이 단중앙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단조직에 요구, 진소, 고소를 제기하고 책임지고 해답해줄 것을 해당 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어느 급의 단조직이나 개인도 단원의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

제4조 단원을 발전시킬 때에는 정치기준을 첫자리에 놓고 다음과 같은 입단절차를 엄격히 밟아야 한다.

(1) 입단을 신청하는 청년은 단원 소개인이 2명 있어야 한다.

(2) 소개인은 책임적으로 피소개인에게 단규약을 설명하고 단조직에 피소개인의 사상과 품행, 경력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입단을 요구하는 청년은 지부위원회에 신청을 제출하고 입단지원서를 쓰며 지부대회의 토론에서 통과되고 상급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단원으로 될 수 있다. 입단을 비준받은 청년은 지부대회에서 단원으로 통과된 날부터 단적을 취득한다.

제5조 새 단원은 반드시 입단식에 참가하여 단기 아래에서 입단선서를 하여야 한다. 그 선서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할 것을 지원한다. 나는 중국공산

당의 령도를 결연히 옹호하며 단규약을 준수하며 단의 결정을 집행하며 단원의 의무를 리행하며 단규률을 엄수하며 부지런히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며 향락을 뒤로 하고 고생에 앞장서며 공산주의사업을 위하여 분투하겠다.

제6조 단원은 한 기층조직에서 다른 기층조직으로 옮겨갈 때 반드시 조직관계 변경절차를 제때에 밟아야 한다.

제7조 단조직은 단원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리행하며 사회주의현대화를 건설하고 조국을 보위하는 사업에서 현저한 성과를 올린 단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장려는 표창통보형식과 단중앙위원회와 성, 시, 현 급 단위원회 및 공청단 기층위원회에서 우수공청단원 칭호를 수여하는 형식 등 두가지가 있다.

제8조 단원은 탈단할 자유가 있다. 탈단을 요구하는 단원은 지부위원회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부대회에서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6개월 동안 단비를 바치지 않고 단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연속 6개월 동안 단조직에서 맡겨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에서 자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에서 자퇴한 단원

에 대해서는 지부대회에서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 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단조직과 단원은 규정에 따라 단원증을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단의 조직제도

제10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 통일적인 전일체이다. 단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단원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조

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한다.

(2) 단의 전국적 령도기관은 단의 전국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중앙위원회이다. 단의 지방 각급 령도기관은 동급 단대표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된 단위원회이다. 각급 단위원회는 동급 단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3) 단의 각급 령도기관은 그에 의하여 파출된 대표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에 의하여 산생된다.

(4) 단의 각급 령도기관은 일상적으로 하급 조직과 단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답게 처리하여야 하며 단의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사업지시를 요청하고 사업을 보고하는 한편

자기 직책내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각급 단조직은 단원들이 단내사무를 더 많이 알고 단내사무에 더욱 많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5) 각급 단위원회는 집단적 령도와 개인책임분담을 결합시키는 제도를 실행한다.

제11조 각급 단위원회는 사업의 수요에 따라 적당한 사업부서를 둘 수 있다. 현급 이상의 각급 단위원회는 대표기관을 파출할 수 있다.

각급 단대표대회 폐회기간에 동급 당조직과 상급 단조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공동론의를 거쳐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단조직의 책임자

를 전근시키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각급 단대표대회의 대표와 단위원회를 선출할 때에는 선거자의 의사를 구현하여야 한다. 선거는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립후보자를 내올 때에는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여야 하며 그 명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여야 한다. 선거하여야 할 인수보다 더 많은 수의 립후보자명단을 내오는 차액선거방법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고 차액선거방법의 예비선거를 통해 립후보자명단을 내온 후 공식적으로 등액선거를 할 수도 있다. 선거자는 립후보자의 정형을 알 권리와 립후보자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그 어떤 립

후보자도 선거하지 않을 권리, 다른 사람을 선거할 권리를 가진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그 방식에 관계 없이 선거자에게 어느 사람을 선거하 라거나 선거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 한다.

단중앙 및 지방 각급 단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중의 전임단간부가 전 직으로 단의 부서를 떠나게 되는 경 우에 해당 위원 또는 후보위원의 직 무는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로 인하 여 생긴 위원결원은 후보위원들중에서 득표수의 다소에 따라 차례로 보 궐한다. 면직사항과 보궐사항은 반드시 전원회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현금 또는 현금 이상 단

위원회는 필요할 때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대표대회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수 있다. 대표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을 조정, 증선헌 수 있다. 조정, 증선헌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의 인원수는 본급 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 총인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표회의의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전단과 관계되는 사업은 단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각급 단조직의 기관지와 기타 선전수단들은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며 상급 단조직과 본급 단조직의 결정과 사업임무를 선전하며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단의 중앙조직

제15조 단의 전국대표대회는 5년에 1회 소집되며 단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앞당겨 소집하거나 연기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의 전국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단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6조 단의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단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심사비준한다.

(2) 전단의 사업 방침과 임무 및 이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단규약을 개정한다.

(4) 단중앙위원회를 선출한다.

단의 전국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단중앙위원회가 단의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을 집행하며 단의 제반 사업을 령도한다.

제17조 단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상무위원을 약간명 선출하여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서기 1명과 서기를 약간명 선출하여 서기처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상

무위원회가 소집하며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상무위원회 폐회기간에는 서기처에서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4장 지방 단조직과 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의 단조직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대회, 구를 설치한 시 및 자치주의 대표대회, 현(기),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및 시 관할구의 단대표대회는 5년에 1회 소집하며 동급 당 대표대회가 소집된 후 1년내에 소집한다.

지방 각급 단대표대회는 동급 단

위원회가 소집한다. 특수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단위 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앞당겨 소집하거나 연기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 각급 단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심사비준한다.

(2) 본 지구의 단사업임무 및 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동급 위원회를 선거한다.

(4) 상급 단대표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거한다.

지방 각급 단위위원회는 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상급 단조직의 지시와 동

급 단대표대회의 결정을 집행하며 당 해 지방의 단사업을 령도하며 정기 적으로 상급 단위원회에 사업보고를 한다.

제20조 지방 각급 단위원회 전 원회의에서는 각 해당급 위원회의 상 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를 선거한 다. 지방 각급 단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가 소집하며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위원회 전원회의 폐 회기간에는 상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지방 각급 단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단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의 단사업은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정치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중앙군사위원회가 령도한다.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단조직은 본 단위의 당조직의 령도하에 단규약,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5장 단의 기층조직

제22조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원(소), 가두와 지역사회, 사회조직, 인민해방군의 련대, 인민무장경찰부대의 중대 및 기타 기층단위는 단원이 3명 이상 있을 경우에 단

의 기층조직을 내와야 한다.

단의 기층조직은 사업의 수요와
단원수에 근거하여 상급 단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단의 기층위원회, 총지
부위원회, 지부위원회를 각기 내와야
한다.

기층위원회와 총지부 아래에는 지
부를 둔다. 사업상 필요할 경우에는
기층위원회 아래에 총지부를 둘 수도
있다. 한개 지부에는 약간의 소조를
둘 수 있다.

지부위원회, 총지부위원회는 단
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다. 그중 대학교와 중학교
의 학생지부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
다. 기층위원회는 단원대회 또는 단

원대표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 내지 5년이고 일반적으로 동급 당위원회의 임기와 일치를 유지한다.

제23조 단의 기층조직은 실제수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당조직 및 행정건제와의 완전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두와 지역사회, 비공유제경제조직, 사회조직 등 단위와 영역의 특징에 비추고 단원청년들의 류동성과 집결적인 분포특징에 비추어 단조직을 설치한다.

제24조 단의 기층조직은 단의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는 기본단위로서 마땅히 청년들을 단합, 교양하는 핵심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단의 기층조직의 기본임무는 다

음과 같다.

(1) 단원과 청년들을 조직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 이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학습하며 단규약과 단의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과학, 문화, 법률 지식과 실무지식을 학습한다.

(2) 당조직과 단조직의 지시와 결정을 선전하고 집행하며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에 참여하며 단원의 모범적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선진기층단조직건설 및 우수공청단원쟁취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청년들을 단합, 인솔하여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

에 적극 뛰어들어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위하여 기여한다.

(3) 단원과 청년들이 혁명선배들을 따라배우고 당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사회주의도덕기풍을 발양하고 인터넷에서 주선률을 고양하며 개혁개방과 사회발전에 부합되는 새로운 관념을 수립하고 불량한 경향을 의식적으로 막아내며 각종 규률과 법을 위반한 행위와 단호히 투쟁하도록 교양한다.

(4) 단원과 청년들의 사상,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며 그들의 권익을 수호하며 그들의 학습, 사업, 생활 및 휴식을 관심하며 문화, 오락, 체

육 활동을 전개한다.

(5) 단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을 교양하고 양성하며 일상적인 단원장 성사업을 잘하고 단비를 거두고 규정 나이를 초과한 단원을 위하여 리단절차를 밟아준다.

(6) 단원을 교양, 관리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단의 조직생활을 건전히 하고 ‘3회2제1과(지부대회, 지부위원회, 단소조회; 단원교양평의제도, 단원년도단적등록제도; 단원교양강의)’제도를 실행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고 단원들이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감독하며 단원들의 권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선진을 표창하고 단규률을 집행한다.

(7) 단원들에 대하여 당의 기본 지식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단원들이 당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추천하며 청년들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며 더욱 중요한 생산,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그들을 추천한다.

제25조 단지부는 당의 기초조직으로서 단원을 직접 교양, 관리, 감독하며 청년들을 조직하고 청년들을 선전하며 청년들을 결집시키고 청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책을 짊어진다.

제26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현저한 성과를 이룩한 당의 기층조직에 대하여 상급 단조직은 장려하여야

한다.

장려는 표창통보형식과 단중앙위원회와 성, 시, 현급 단위위원회 및 기층 단위위원회에서 5.4홍기단조직칭호를 수여하는 형식 등 두가지가 있다.

제6장 단의 간부

제27조 단간부는 단사업의 중견이기에 반드시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광범한 청년들을 마음에 두며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훌륭한 기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청단은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재덕겸비, 덕행우선시의 원칙을 견지하고 지역과 출신에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

과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공정하고 단정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간부로 임용하는 것을 견지하며 ‘새 간부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중견을 남겨두는’ 동시에 우수한 젊은 간부의 양성과 선발을 중시하여 단간부대오의 혁명화, 년소화, 지식화, 전문화를 힘써 실현하며 대중단체조직의 특징에 맞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단간부대오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28조 단의 각급 지도간부는 반드시 충성, 청렴,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고 신념이 확고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며 근면하고 실무적이며 과감히 책임지며 청렴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단원과 청년들의 본보기가

되고 단원의 제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하며 열심히 학습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과감히 창조하며 자각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당이 안심하고 청년들이 만족해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1) 정치적으로 확고하여야 한다. 상응한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의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앞장서 관철실시하고 리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며 학습을 중시하고 정치를 중시하고 바른 기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의 기본로선과 제반 방침과 정책을 단호히 집행하고 개혁개방의 의지를 다지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사업에 헌신하여야 한다.

(2) 열심히 학습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력사, 법률, 과학기술 및 현대관리 지식을 술선적으로 학습하며 서책에서 배우고 실천에서 배우고 청년들에게서 배우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사업능력을 힘써 높이고 사상정책수준과 실무능력을 끊임 없이 높여야 한다.

(3) 부지런히 일하여야 한다. 혁명사업에 대한 강한 의욕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부지런히 사고하고 과감히 혁신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청년들을 상대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실적을 적극 쌓아야 한다.

(4) 기풍이 엄밀하여야 한다. 생
기발랄하고 실사구시하며 민주를 발
양하고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기층에 심입하여 조사연구하며
실제적인 말을 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효를 추구하여야 하며 형식주
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반대하고 앞장서 청년들과 직접 연계
하고 청년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봉
사하며 청년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야
한다.

(5) 품성이 고상하여야 한다. 전
반적 국면을 돌보며 공정하고 정직하
며 동지들과 단합하고 남을 돕는 것
을 기쁘게 생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
여야 하며 청렴하고 자기비판정신이

있어야 하며 단원과 청년들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29조 각급 단조직은 당을 협조하여 단간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단간부에 대한 선발, 양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간부임용 원천 및 경로를 넓히며 경제와 사회 발전이 가장 필요한 지역, 기층 제일선과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간부를 단련시켜야 하며 정기적인 훈련제도를 수립하고 각급 단학교를 잘 꾸리며 정치훈련에 중점을 두고 청년사업분야에서 당의 특색이 선명한 정치학교를 건설하여야 하며 단간부에 대한 고과, 감독 및 문책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야 하며 해당 당위원회와 단위원회

에 하급 또는 동급 단조직의 책임자 인선을 주동적으로 추천하고 단간부의 전근에 대하여 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각급 단조직은 단간부의 사업, 학습, 생활과 휴식을 관심하며 그들을 도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들의 성장과 전직에 여건을 적극 마련해주어야 한다.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단간부에 대하여 단조직은 표창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30조 단간부는 당조직사업의 전반적 국면을 착실히 파악하고 단의 사업상황을 주동적으로 보고하며 책임적으로 의견을 적극 발표하며 단의

사업실제와 결부하여 당조직에서 맡겨준 임무를 창조적으로 완수하여야 한다.

제7장 단의 규률

제31조 단의 규률은 각급 단조직과 전체 단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준칙이며 당의 령도하에 단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이 부여하는 직책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담보가 된다. 단조직은 단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공청단원은 의식적으로 단규률의 단속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단조직은 지난 일을 정

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고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는 정신에 따라 단규를 위반한 단원을 비판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정상이 심각한 자에게는 규률적 책벌을 준다.

제33조 단원에 대한 규률적 책벌에는 경고, 엄중경고, 단내직무취소, 권리정지, 출단 등 다섯가지가 있다.

권리정지기한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단원은 권리정지기간에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이 없으며 청년의 입단소개인으로 되지 못한다. 권리정지기한이 만료되고 또 과오를 시정한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단원의 단원권리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권리정지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과오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단시켜야 한다.

제34조 단원에 대한 규률적 책별은 지부대회에서 토의, 통과하고 기층 단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은 후 동급 기층당 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급 및 현급 이상 각급 단위원회가 단원에 대한 규률적 책별을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되는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할 경우 또는 단원에게 출단책별을 줄 경우에는 성급 단위원회 또는 단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단조직에서 단원에 대하

여 책별결정을 내릴 때에는 엄숙하고
도 신중하여야 하며 실사구시적이어
야 한다. 지부대회에서 단원에 대한
책별을 토의, 결정할 때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
하여야 한다. 책별이 결정된 후 책별
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단조직은 불복신청을
끌아두지 말고 책임적으로 처리하거
나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확실
히 그릇된 의견을 고집하고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
판, 교양하여야 한다.

제36조 단조직이 단규를수호 직
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급 단위원회가 해당 단조직을 문책하여야 한다.

제8장 단기, 단회장, 단가

제37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단기는 붉은색바탕으로 혁명의 승리를 상징한다. 기폭의 왼쪽 옷견에는 노란색 오각별과 그 오각별을 둘러싼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청년세대가 중국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있음을 상징한다.

제38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단회장은 단기와 치륜, 밀이삭, 빛을 뿌리며 떠오르는 태양 그리고 ‘중국공청단’이라는 다섯 글자가 쓰인 띠

로 구성되었다. 단회장은 공청단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빛받 아래 여러 민족 청년들을 단합하여 당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용왕매진함을 상징한다.

제39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단가는 <빛나라, 중국공청단>이다.

제40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 단기, 단회장과 단가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상징이며 표지이다. 단의 단기, 단회장과 단가는 규정 대로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제9장 단의 경비

제41조 단의 경비는 단원이 납

부한 단비, 당과 정부, 기업, 사업 단위의 청소년사업 관련 경비와 단의 사업경비, 정당한 사회후원 그리고 단조직의 기타 합법적 소득을 주요원천으로 한다.

제42조 단비의 납부, 관리, 사용 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10장 단과 소년선봉대와의 관계

제43조 중국소년선봉대는 중국 소년아동의 대중단체조직으로서 소년아동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우는 학교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예비대이다.

공청단은 ‘전단이 소년선봉대를 이끄는’ 전통을 발양하여 소년선봉대 조직의 각급 업무기구를 건전히 하고 소년선봉대의 조직건설을 강화하며 소년선봉대가 조직교육, 자주교육, 실천활동을 창조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지하고 소년아동들의 성장을 보호하고 관심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사상과 공산주의정신으로 소년아동들을 교양하고 그들이 당의 말을 듣고 학습을 잘하여 나날이 향상하며 어릴 때부터 바른 됃됨이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뜻을 세우고 어릴 때부터 창의력을 키우며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며 신체를

단련하고 능력을 키우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학습하고 실천하며 민족부흥의 중임을 떠메고 나갈 시대적신인으로 되고 공산주의사업의 후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중학교의 공청단조직은 입단전 소선대원에 대한 교양, 양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선대조직은 우수소선대원들이 단원으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 추천하여야 한다.

제44조 단조직은 우수단원을 선임하거나 사상이 진보적이고 작품이 단정하며 지식이 풍부하고 소년아동을 사랑하는 교사와 선진인물 및 기타 인원을 초빙하여 소년선봉대의 보도원직을 맡기며 사상, 업무, 생활면에서

그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도와 정치와
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
야 한다. 뚜렷한 성과를 이룩한 보도
원과 소선대사업일군에 대해서는 마
땅히 표창하고 장려하여야 한다.